

1. 개정이유

여객자동차 운송업체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(안 제8조제8항)

나.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·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

(안 제18조제3호, 제21조제3항제2호라목,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)

다.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(안 제44조의6제2항)

라.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(안 별표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항제1호 나목 본문 중 “1개소”를 “최대 2개소 이내”로 한다.

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3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.

제35조제5항제2호사목을 삭제한다.

제44조의6제2항 전단 중 “마을버스운송사업자”를 “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의 특별시 및 광역시란 중 “20대”를 “10대”로 하고, 같은 호 비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등록기준 대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 및 경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차량 대수로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된 전체 차량 대수를 의미한다.
5.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차고의 전체 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량 대수를 지역 내 운송사업자의 평시 차고지 주차율, 장거리 영업 비중, 공

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첨부서류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의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란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의 양수자란 중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양수자란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“반명함판 사진(3cm×4cm)”를 “사진(3.5cm×4.5cm)”로 한다.

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“(2.5cm×3.0cm)”를 “(3.5cm×4.5cm)”로 하고,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2) 중 “(2.5cm×3.0cm)”를 “(3.5cm×4.5cm)”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“2.5cm×3cm”를 “3.5cm×4.5cm”로 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중 “(2.5cm×3cm)”를 “(3.5cm×4.5cm)”로 한다.

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중 “3cm×4cm”를 “3.5cm×4.5cm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) ① ~ ⑦ (생략)	제8조(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⑧ ----- ----- -----.
1. 고속형: 별표 1 제2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,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,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,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.	1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시·군의 행정구역 안
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
하는 경우. 다만, 특별시·
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
시·군의 행정구역 안의
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
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
의 이용승객은 승·하차시
킬 수 없다.

다. (생략)

제18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
신청)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
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
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
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
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
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반명합판 사진 1장 또는 전자
적 파일 형태의 사진(인터넷
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
며, 이하 제21조제3항제2호라
목 및 제35조제5항제2호사목
에서 같다)

4. (생략)

--- 최대 2개소 이내 ---
-----.

-----.

다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
신청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4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) ①·② (생략)

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삭제

나.·다. (생략)

라.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

마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제35조(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

제21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마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·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1. (생략) 2.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~ 바. (생략) <u>사. 반명합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</u> 아. (생략) ⑥ ~ ⑧ (생략) 제44조의6(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마을버스운송사업자</u>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·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아. (현행과 같음) ⑥ ~ ⑧ (현행과 같음) 제44조의6(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 시내버</u> <u>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	---